

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

□ 관련규정

한국도자재단 인사관리규정(일부 발췌)

제19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.

7.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11. 정부 및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, 해임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(개정 2017.8.9.)
12.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